

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

신청인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	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
기준 살생물물질 정보	살생물물질명		
	고유번호 (CAS No. 등)		
	승인번호	승인 유효기간	
살생물물질명			
고유번호 (CAS No. 등)			
접수번호	(접수일시:)	승인번호	제 호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직인